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민원여권과-8353 |
| 등록일자 | 2016.3.28. |
| 결재일자 | 2016.3.28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|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가족관계등록 팀장 | 민원여권과장 | 주민자치국장 | 부구청장 | 구청장 |
| 김혜원 | 명춘금 | 서용선 | 김종두 | 조인동 | 03/28 문석진 |
| 협 조 |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규제개혁팀장 代김오녀 주무관 김오녀 | | | | |

**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
부과 ·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계획**



서 대 문 구
민원여권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계획

『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』, 『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』 및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폐지대상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(제정1991.07.10. 조례 제155호)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시행규칙(제정 1991.05.01. 제25호)

근거법률

- 「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1조, 제122조, 제124조
- 「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50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, 제17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, 제8조

폐지이유

- 2007.7.23. 제정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, 2007.12.21. 제정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함.

■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 폐지 (제정 1991,07.10 조례 제155호)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시행규칙」 폐지 (제정 1991,05.01 조례 제25호)

■ 주요 추진일정

- 입법예고 : 2016. 3월 ~ 4월(20일이상)
-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: 2016. 4월중
- 구의회 상정 : 2016. 5월중
- 공포, 시행 : 2016. 6월중